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11.23(목)

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안 이유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의2 제1항,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“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” 구성·운영하고 같은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- 또한 도민들의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내 도시림, 생활림, 가로수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·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성·관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시림 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목적(안 제1조)
- 도시림 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기능(안 제5조)
 - 도시림 등 조성·관리·기능 증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
- 도시림 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6조)
 - 공무원,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전문가, 주민 대표,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

- 도시림 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회의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'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의2 제1항,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"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" 구성·운영하고 같은 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